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6. 15 선고 2021가합4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

전 문

원 고 1. A 주식회사

2. 주식회사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2. 5. 11.

판 결 선 고 2022. 6.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9. 28. 접수 제20769호로
마친,

나.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11. 15. 접수
제24095호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11. 15. 접수
제24096호로,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11. 15. 접수
제24097호로 각 마친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재판장 판사 정정호, 판사 이나리, 판사 허유정

별지